

문서번호	2018-211
보존기간	영구
보고일자	2018.8.10

★ 기 안	● 사무국장	대표이사
협 조		

제211회 사회복지법인 동암 이사회 회의록

사회복지법인 동암
법인사무국

제211회 사회복지법인 동암 이사회 회의록

회의소집통보일 2018. 8. 1.	
위원정수 : 8명	재적위원 : 8명

1. 회의일시 : 2018. 8. 9. 15:30
2. 회의장소 : 법인사무실(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46)
3. 참석이사 : 5명(대표이사 : 양복규, 이사 : 임규래, 김돈자, 임계택, 김진태)
4. 참석감사 : 1명(감사 : 김영일)
5. 참여자 : 1명(김희진)
6. 회의안건 :
 - 1) 사회복지법인 동암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안
 - 2) 사회복지법인 동암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 3) 전북라북도장애인복지관 2018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 4) 전북라북도장애인복지관 운영규정 개정안
 - 5) 전북장애인보호작업장 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 6) 전북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규정 개정안
 - 7) 동암차돌학교 사무직원 근속승진 임용안
 - 8) 동암차돌학교 기간제 교원 임용안

- 개회선언 : 대표이사(양복규) 2018. 8. 9. 15 : 40

대표이사(양복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성원을 이루어주신 이사님들께 감사드리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이사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법인 동암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인은 전주신시 가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상받은 금전과 대표이사인 제가 현금으로 출현하여 이루어진 수익용 기본재산 915,654,630원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만 보관을 하다보니 재산가치도 떨어질뿐만 아니라 은행권의 이자도 갈수록 줄어들어 수입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부동산을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임규래)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은행의 이자도 갈수록 줄어드는 현실

에서 재산을 현금으로 은행에 예치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대단히 비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다른 사업도 많지만 제일 안정적인 것은 부동산을 보유하여 운영하는 방법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사(김진태)

임규래이사님 동의에 재청합니다.

대표이사(양복규)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이사 전 원



동의에 재청이 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의가 성립된 것으로 알고 본 안건에 대한 가부를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시는 이사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이사 전 원

찬성에 거수하다.

대표이사(양복규)

모두 찬성하여 주심으로 사회복지법인 동암 수익용기본재산 처분안은 원안과 같이 현금자산을 처분하여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안건은 사회복지법인 동암 제1차 추가경정예산입니다. 먼저 나눠드린 자료를 확인하셨으리라 보며, 이에 대하여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김진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법인운영에 맞게 적절히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동의합니다.

이 사(김돈자)

김진태이사님 동의에 재청합니다.

대표이사(양복규)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이사 전 원

다른 의견 없습니다.

대표이사(양복규)

동의에 재청이 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의가 성립된 것으로 알고 본 안건에 대한 가부를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시는 이사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이사 전 원

찬성에 거수하다.

대표이사(양복규)

전원이 찬성하심으로 사회복지법인동암 2018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세입에서 재산수입 16,074,000원 사업수입 525,712,000원 후원금수입 6,000,000원 이월금 174,288,000원 잡수입 144,600,000원합계 866,674,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사무비 122,060,000원 재산조성비 5,000,000원 사업비 524,661,000원 전출금 56,933,000원 예비비 158,020,000원으로 세입·세출합계 각각 866,674,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안건은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나눠드린 자료를 확인하셨으리라 보며, 이에 대하여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김진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복지관 형편에 맞게 적절히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동의합니다.
- 이사(김돈자) 김진태이사님 동의에 재청합니다.
- 대표이사(양복규)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이사 전원 다른 의견 없습니다.
- 대표이사(양복규)  동의에 재청이 있고 다른 의견 없으므로, 동의가 성립된 것으로 알고 안전에 대한 기능을 표출해 불이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이사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이사전원 찬성에 거수하다.
- 대표이사(양복규) 전원 찬성하심으로 2018년 제3차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전라북보조금지원사업과 외부공모사업으로 구분 함. 보조금지원사업 세입은 장애인복지관운영 2,831,368천원, 장애인체육관운영 487,749천원, 외부공모사업 세입은 직업재활센터 154,342천원,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266,611천원, 활동보조인교육사업 155,031천원, 장애인일자리사업 206,990천원, 취약계층 월동지원사업 2,650천원, 개관30주년 지정기탁사업 1,500천원, 현대해상자원봉사지원사업 3,221천원, 장애인가족지원사업 12,005천원, 장애가족형제자매교육비지원사업 2,000천원, 지정기탁 주거환경생개선사업 4,001천원, 장애아동국악교실 2,558천원, 직무역량강화지원사업 1,701천원으로 세입 총액은 4,131,727천원이며, 보조금 지원사업 세출은 장애인복지관운영 2,831,368천원, 장애인체육관운영 487,749천원, 외부공모사업 세입은 직업재활센터 154,342천원,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266,611천원, 활동보조인교육사업 155,031천원, 장애인일자리사업 206,990천원, 취약계층 월동지원사업 2,650천원, 개관30주년 지정기탁사업 1,500천원, 현대해상자원봉사지원사업 3,221천원, 장애인가족지원사업 12,005천원, 장애가족형제자매교육비지원사업 2,000천원, 지정기탁 주거환경생개선사업 4,001천원, 장애아동국악교실 2,558천원, 직무역량강화지원사업 1,701천원으로 세입 총액은 4,131,727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운영규정 개정안입니다. 복지관 정원 45명 중 결원3명이 장기간 충원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전라북도와 도의회에서 조직진단 등을 통하여 적정인원으로 정원조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복지관 사업분석을 통한 적정인원 조정내용으로는 일반직4급 19명을 15명으로 관리직 4급 2명을 3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김돈자) 복지관의 사업에 필요한 인원으로 조정을 하여 운영을 하면 효율적일것입니다. 이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이사(임규래) 김돈자이사님 동의에 재청합니다.

대표이사(양복규)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이사 전 원	다른 의견 없습니다.
대표이사(양복규)	동의에 재청이 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의가 성립된 것으로 알고 본 안건에 대한 가부를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시는 이사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이사 전 원	<u>찬성에 거수하다.</u>
대표이사(양복규)	모두 찬성하니 주심으로 전북장애인복지관 운영규정 개정안은 원안과 같이 정원을 3명 감축하여 일반직 25명 관리직4명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안건은 <u>전북장애인보호작업장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u> 입니다. 먼저 나눠드린 자료를 확인하셨으리라 보며, 이에 대하여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임규래)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보호작업장 형편에 맞게 적절히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u>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동의합니다.</u>
이 사(김돈자)	임규래이사님 <u>동의에 재청합니다.</u>
대표이사(양복규)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이사 전 원	다른 의견 없습니다.
대표이사(양복규)	동의에 재청이 있고 다른 의견 없으므로 동의가 성립된 것으로 알고 본 안건에 대한 가부를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이사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이사전 원	<u>찬성에 거수하다.</u>
대표이사(양복규)	전원 찬성하심으로 전북장애인보호작업장 2018년 제2차 추경 예산 안건은 원안과 같이 세입에서 사업수입1,325,800천원 보조금수입485,018천원 후원금1,000천원 전입금7,280천원 이월금191,188천원 잡수입14,800천원이며 세출에서 사무비 691,174천원 재산조성비132,404천원 사업비1,189,218천원 예비비12,290천원으로 세입,세출 각각 2,025,086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u>전북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규정 개정안</u> 입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잘 검토하였으리라 사료되며 이에 대하여 이사님들의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김돈자)	전북장애인보호작업장 현실에 맞게 운영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u>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u>
이 사(정영백)	김돈자이사님 <u>동의에 재청합니다.</u>
대표이사(양복규)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이사 전 원 다른 의견 없습니다.
- 대표이사(양복규) 동의에 재청이 있고 다른 의견 없으므로 동의가 성립된 것으로 알고 본 안건에 대한 가부를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이사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이사 전 원 찬성에 거수하다.
- 대표이사(양복규) 전원 찬성하심으로 전북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규정개정안은 원안과 같이 생활지도원과 함께 재직자부 지침을 준용하여 개정하도록 직원의 임용은 시설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인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동암차돌학교 사무직원 근속 승진안입니다. 생활지도원 김대훈씨와 조아람씨를 위생8급으로 운전원 홍성용씨를 운전8급으로 서재필씨를 시설관리8급으로 임용제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사님들의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사(임 규 래) : 근속승진 김대훈, 조아람, 홍성용, 서재필씨는 충분한 기간동안 열심히 근무하신분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함을 동의합니다
- 이 사(임 계 택) : 임규래 이사님 동의에 재청합니다.
- 대 표 이 사(양 복 규) :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이 사(전 원) : 다른 의견 없습니다.
- 대 표 이 사(양 복 규) : 동의에 재청이 있고 다른 의견 없으므로 동의가 성립된 것으로 알고 본 안건에 대한 가부를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이사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이 사(전 원) : 찬성에 거수하다.
- 대 표 이 사(양 복 규) : 전원 찬성하심으로 근속승진임용안은 원안과 같이 생활지도원 김대훈씨와 조아람씨를 위생8급으로 운전원 홍성용씨를 운전8급으로 서재필씨를 시설관리8급으로 임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동암차돌학교 기간제교사 임명안입니다. 매학기 교육청으로부터 정원외 기간제교사를 배정받는데 이번학기에도 2명을 배치하였습니다. 학교로부터 영어를 담당하는 이수현씨 한분은 임용제청되었으나 체육을 담당하는 한분은 현재 선발과정을 진행중이며 아직 선발을 하지 못하여 제청되지 못하였습니다. 여름방학 기간이 짧은점을 감안하여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사(임 규 래) : 현재 임명제청한 분은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추었기에 원안대로 임명하고 현재 채용공고를 한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는 차후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명하면 시일이 많이 걸려 신한기 학사 일정

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결격사유가 없을 시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것으로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사(김진태) : 임규래 이사님 동의에 재청합니다.

대표이사(양복규) :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이사(전원) : 다른 의견 없습니다.

대표이사(양복규) : 동의에 재청이 있고 다른 의견 없으므로 동의가 성립된 것으로
~~알고~~ ~~안전에~~ 대한 ~~자본금~~ 표결해 ~~붙이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이사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이사(전원) : 찬성에 거수하다.

대표이사(양복규) : 전원 찬성하심으로 현재 임명 제청된 이수현씨는 원안대로 임명하고 현재 선발진행중인 한분에 대하여는 학교로부터 임용제 청 되는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법인 동암 211회 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여주신 이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폐회선언 : 대표이사(양복규) 2018. 8. 9 16:30

대표이사 양복규



이사임규래



이사김돈자



이사임계택



이사김진태



감사김영일

